

## II. 「공개시장운영에 관한 사무취급절차」 신규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10조(등록청구) ① 규정 제30조에서 정한 등록은 통화안정증권등록청구서&lt;별지 제14호 서식&gt; 또는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청구한다. 등록청구인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09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명자로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.</p> <p>② 규정 제31조에서 정한 등록청구의 경우에는 통화안정증권등록청구서&lt;별지 제14호 서식&gt;와 <u>통화안정증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규정 제34조에서 정한 질권등록은 통화안정증권부기등록(말소)청구서&lt;별지 제15호 서식&gt; 또는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청구한다.</p>	<p>제10조(등록청구) ① 규정 <u>제30조에 따른 등록청구는</u> 통화안정증권등록청구서&lt;별지 제14호 서식&gt; 또는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<u>한다.</u> 「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</u>」 제309조제5항 또는 「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</u>」 제7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</p> <p>② 규정 제31조에 따른 등록청구는 <u>통화안정증권등록청구서&lt;별지 제14호 서식&gt;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규정 제34조에 따른 질권등록은 통화안정증권부기등록(말소)청구서&lt;별지 제15호 서식&gt; 또는 한은금융망을 통한 전문송신으로 청구한다.</p>	<p>- 근거법률에 「전자증권법」 추가(현물증권 등은 「자본시장법」에 따라 등록)</p> 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<u>제17조(원리금 및 환매대금의 처리) 지역본부는 통화안정증권의 원리금 또는 환매대금을 지급한 당일 본부에 역이체 처리한다.</u></p> <p>② 삭제 &lt;2009.5.26&gt;</p>	<p><u>제17조(원리금 및 환매대금의 처리) 지역본부는 통화안정증권의 원리금 또는 환매대금을 지급한 당일 본부에 역이체 처리한다.</u></p>	<p>- 삭제된 항 정리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18조(증권과목) 통화안정증권은 미발행증권, 보관증권, 폐기증권 및 보기증권으로 <u>구분관리</u>하며 그 내용은 &lt;별표 1&gt;과 같다.</p>	<p>제18조(증권과목) 통화안정증권은 미발행증권, 보관증권, 폐기증권 및 보기증권으로 <u>구분하여 관리</u>하며 그 내용은 &lt;별표 1&gt;과 같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19조(이표의 관리) ① 통화안정증권 이표 중 본권과 분리된 폐기이표는 지급이표와 미지급이표로 <u>구분관리</u>하며 그 내용은 &lt;별표 2&gt;와 같다.</p> <p>② 통화안정증권의 등록변환, 등록삭제 또는 권종교환으로 미지급이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이표는 본권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증권현물 <u>작성시</u> 기재사항 잘못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타증권의 경우에는 본권과 분리하지 않고 관리한다.</p>	<p>제19조(이표의 관리) ① 통화안정증권 이표 중 본권과 분리된 폐기이표는 지급이표와 미지급이표로 <u>구분하여 관리</u>하며 그 내용은 &lt;별표 2&gt;와 같다.</p> <p>② 통화안정증권의 등록변환, 등록삭제 또는 권종교환으로 미지급이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이표는 본권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증권현물 <u>작성 시</u> 기재사항 잘못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타증권의 경우에는 본권과 분리하지 않고 관리한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22조(단순매매시의 증권 인수도) ① 규정 제5조에 따른 <u>증권매매시</u>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을 매매한 경우 매각기관은 당일 중 해당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의 매입기관계좌로 대체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급하는 계좌대체확인서를 매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한은금융망을 통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통지 전문송신으로 같음한다.</p> <p>② ~ ④ ( 생 략 )</p>	<p>제22조(<u>단순매매 시</u>의 증권 인수도) ① 규정 제5조에 따른 <u>증권매매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계좌부에 기재되거나</u>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을 매매한 경우 매각기관은 당일 중 해당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의 매입기관계좌로 대체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급하는 계좌대체확인서를 매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한은금융망을 통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통지 전문송신으로 같음한다.</p> <p>② ~ ④ ( 현행과 같음 )</p>	<p>- 「전자증권법」 시행에 따른 표현 변경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23조(환매조건부 <u>매매시</u>의 증권 인수도) 한국은행이 대상기관과 환매조건부로 증권을 매매한 경우 증권의 인수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·비치하는 <u>예탁자계좌부 상의 계좌간 대체</u> 방법으로 한다.</p>	<p>제23조(환매조건부 <u>매매 시</u>의 증권 인수도) 한국은행이 대상기관과 환매조건부로 증권을 매매한 경우 증권의 인수도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<u>계좌간 대체</u> 방법으로 한다.</p>	<p>- 결제 계좌를 특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</p>
<p>제24조(증권대차시의 증권 인수도) ① ( 생 략 ) ② 한국은행이 대상기관과 증권대차한 경우 증권의 인수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·비치하는 <u>예탁자계좌부 상의 계좌간 대체</u> 방법으로 한다.</p>	<p>제24조(증권대차 <u>시</u>의 증권 인수도) ① ( 현행과 같음 ) ② 한국은행이 대상기관과 증권대차한 경우 증권의 인수도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<u>계좌간 대체</u> 방법으로 한다.</p>	<p>- 결제 계좌를 특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</p>
<p>제25조(증권현물의 관리) ① ( 생 략 ) ② <u>시재검사시</u>에 한국예탁결제원 예탁분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잔액증명확인서(계좌부 첨부)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망을 통하여 출력하는 예탁자계좌부로 확인한다.</p>	<p>제25조(증권현물의 관리) ① ( 현행과 같음 ) ② <u>시재검사 시</u>에 한국예탁결제원 예탁분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잔액증명확인서(계좌부 첨부)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망을 통하여 출력하는 예탁자계좌부로 확인한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띄어쓰기 변경</p>
<p>제26조 (장부) ① 통화안정증권 사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 <u>1. 통화안정증권발행액원장</u></p>	<p>제26조 (장부) ① 통화안정증권 사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 <u>1. 통화안정증권발행액원장&lt;별지 제28호 서식&gt;</u>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2. <u>통화안정증권 유효이자율 및 상각표</u></p> <p>3. <u>통화안정증권 할인·할증발행차금 상각명세표</u></p> <p>4. <u>통화안정증권발행명세장</u></p> <p>5. <u>통화안정증권출납총괄장</u></p> <p>6. <u>통화안정증권출납장</u></p> <p>7. <u>통화안정증권소각명세장</u></p> <p>8. <u>통화안정증권등록부</u></p> <p>9. <u>통화안정증권등록총괄장</u></p> <p>10. <u>통화안정증권질권등록총괄장</u></p> <p>11. <u>통화안정증권상환명세장</u></p> <p>12. <u>통화안정증권환매명세장</u></p> <p>13. <u>통화안정증권사고신고접수부</u></p> <p>14. <u>통화안정증권원천징수대장</u></p>	<p>2. <u>통화안정증권 유효이자율 및 상각표&lt;별지 제29호 서식&gt;</u></p> <p>3. <u>통화안정증권 할인·할증발행차금 상각명세표&lt;별지 제30호 서식&gt;</u></p> <p>4. <u>통화안정증권발행명세장&lt;별지 제31호 서식&gt;</u></p> <p>5. <u>통화안정증권출납총괄장&lt;별지 제32호 서식&gt;</u></p> <p>6. <u>통화안정증권출납장&lt;별지 제33호 서식&gt;</u></p> <p>7. <u>통화안정증권소각명세장&lt;별지 제34호 서식&gt;</u></p> <p>8. <u>통화안정증권등록부&lt;별지 제35호 서식&gt;</u></p> <p>9. <u>통화안정증권등록총괄장&lt;별지 제36호 서식&gt;</u></p> <p>10. <u>통화안정증권질권등록총괄장&lt;별지 제37호 서식&gt;</u></p> <p>11. <u>통화안정증권상환명세장&lt;별지 제38호 서식&gt;</u></p> <p>12. <u>통화안정증권환매명세장&lt;별지 제39호 서식&gt;</u></p> <p>13. <u>통화안정증권사고신고접수부&lt;별지 제40호 서식&gt;</u></p> <p>14. <u>통화안정증권원천징수대장&lt;별지 제41호 서식&gt;</u>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② 증권매매 사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 부를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소유증권원장</u></p> <p>2. <u>소유증권명세장</u></p> <p>3. <u>증권출납장</u></p> <p>4. <u>소유증권이자기입장</u></p> <p>5. <u>환매조건부매매원장</u></p> <p>6. <u>환매조건부매매대상증권명세장</u></p> <p>7. <u>증권대차명세장</u></p> <p>③ ( 생 략 )</p>	<p>② 증권매매 사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 부를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소유증권원장&lt;별지 제42호 서식&gt;</u></p> <p>2. <u>소유증권명세장&lt;별지 제43호 서식&gt;</u></p> <p>3. <u>증권출납장&lt;별지 제44호 서식&gt;</u></p> <p>4. <u>소유증권이자기입장&lt;별지 제45호 서식&gt;</u></p> <p>5. <u>환매조건부매매원장&lt;별지 제46호 서식&gt;</u></p> <p>6. <u>환매조건부매매대상증권명세장&lt;별지 제47호 서식&gt;</u></p> <p>7. <u>증권대차명세장&lt;별지 제48호 서식&gt;</u></p> <p>③ ( 현행과 같음 )</p>	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장 <u>기 타</u></p> <p>제27조(전표) ① 통화안정증권 사무취급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전표로 사용한다. 다만, 한은금융망을 통한 <u>거래시</u> 전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전산처리 결과 출력되는 자료를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( 생 략 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장 <u>그 밖의 사항</u></p> <p>제27조(전표) ① 통화안정증권 사무취급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전표로 사용한다. 다만, 한은금융망을 통한 <u>거래 시</u> 전표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전산처리 결과 출력되는 자료를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( 현행과 같음 )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28조(상위직급자의 거래승인) 다음 각 호의 <u>업무에 대하여는</u> 담당자의 상위직급자가 미리 거래승인을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 생 략 )</p>	<p>제28조(상위직급자의 거래승인) 다음 각 호의 <u>업무는</u> 담당자의 상위직급자가 미리 거래승인을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 현행과 같음 )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제29조(준용규정) 증권에 관한 보관 및 관리, 증권에 관한 무효기준 및 폐기 등에 <u>대하여는</u> 이 절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국채사무취급절차」를 준용한다.</p>	<p>제29조(준용규정) 증권에 관한 보관 및 관리, 증권에 관한 무효기준 및 폐기 등에 <u>관한 사항은</u> 이 절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국채사무취급절차」를 준용한다.</p>	<p>- 법규제도실 규정 정비에 따른 표현 변경</p>
<p>&lt; 신 설 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 &lt;2019. 9. 16&gt;</u> 이 절차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- 부칙 신설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별 지 서 식</b></p> <p>별지 제1호 서식 ~ 별지 제27호 서식 ( 생 략 )</p> <p><u>장부 제 1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발행액원장</p> <p><u>장부 제1-1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 유효이자율 및 상각표</p> <p><u>장부 제1-2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 할인·할증액 상각명세표</p> <p><u>장부 제 2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발행명세장</p> <p><u>장부 제 3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출납총괄장</p> <p><u>장부 제 4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출납장</p> <p><u>장부 제 5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소각명세장</p> <p><u>장부 제 6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등록부</p> <p><u>장부 제 7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등록총괄장</p> <p><u>장부 제 8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질권등록총괄장</p> <p><u>장부 제 9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상환명세장</p> <p><u>장부 제10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환매명세장</p> <p><u>장부 제11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사고신고접수부</p> <p><u>장부 제12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원천징수대장</p> <p><u>장부 제13호 서식</u> 소유증권원장</p> <p><u>장부 제14호 서식</u> 소유증권명세장</p> <p><u>장부 제15호 서식</u> 증권출납장</p> <p><u>장부 제16호 서식</u> 소유증권이자기입장</p> <p><u>장부 제17호 서식</u> 환매조건부매매원장</p> <p><u>장부 제18호 서식</u> 환매조건부매매대상증권명세장</p> <p><u>장부 제19호 서식</u> 증권대차명세장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별 지 서 식</b></p> <p>별지 제1호 서식 ~ 별지 제27호 서식 ( 현행과 같음 )</p> <p><u>별지 제28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발행액원장</p> <p><u>별지 제29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 유효이자율 및 상각표</p> <p><u>별지 제30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 할인·할증액 상각명세표</p> <p><u>별지 제31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발행명세장</p> <p><u>별지 제32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출납총괄장</p> <p><u>별지 제33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출납장</p> <p><u>별지 제34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소각명세장</p> <p><u>별지 제35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등록부</p> <p><u>별지 제36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등록총괄장</p> <p><u>별지 제37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질권등록총괄장</p> <p><u>별지 제38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상환명세장</p> <p><u>별지 제39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환매명세장</p> <p><u>별지 제40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사고신고접수부</p> <p><u>별지 제41호 서식</u> 통화안정증권원천징수대장</p> <p><u>별지 제42호 서식</u> 소유증권원장</p> <p><u>별지 제43호 서식</u> 소유증권명세장</p> <p><u>별지 제44호 서식</u> 증권출납장</p> <p><u>별지 제45호 서식</u> 소유증권이자기입장</p> <p><u>별지 제46호 서식</u> 환매조건부매매원장</p> <p><u>별지 제47호 서식</u> 환매조건부매매대상증권명세장</p> <p><u>별지 제48호 서식</u> 증권대차명세장</p>	<p>- 장부 서식 번호 정비</p>

현 행

개 정 안

비 고

<별지 제1호 서식>

<별지 제1호 서식>

(앞면)		고객번호		
<b>인감신고서</b>				
한국은행 귀중				
거 래 종 류	효력개시일자			
(통화안정증권, 증권매매·증권대차)	년 월 일			
귀행과의 위 거래에 사용할 (본인·기관대표자) 인감을 신고합니다.				
인 감				
비밀번호	※			
주 소				
기 관 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			
성 명				
년 월 일				
신 고 인 : (인)				
(기관대표자)		인감대조	계 인	검 인

(앞면)		고객번호		
<b>인감신고서</b>				
한국은행 귀중				
거 래 종 류	효력개시일자			
(통화안정증권, 증권매매·증권대차)	년 월 일			
귀행과의 위 거래에 사용할 (본인·기관대표자) 인감을 신고합니다.				
인 감				
비밀번호	※			
주 소				
기 관 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( <u>생년월일</u> )				
성 명				
년 월 일				
신 고 인 : (인)				
(기관대표자)		인감대조	계 인	검 인

- “주민등록번호”를  
“생년월일”로 변경

붙임서류 : 기관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

붙임서류 : 기관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

※ 표란은 개인의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(4자리 이상)로 기입하십시오.

※ 표란은 개인의 경우에만 아라비아 숫자(4자리 이상)로 기입하십시오.

(규격 : 90mm×195mm)

(규격 : 90mm×195mm)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장 부 서 식	< 삭 제 >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1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28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1-1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29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1-2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30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2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31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3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32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4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33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5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34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6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35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7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36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8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37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9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38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10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39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11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40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12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41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13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42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14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43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15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44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16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45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17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46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18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47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
<장부 제19호 서식> ( 생 략 )	<별지 제48호 서식> ( 현행과 같음 )	- 장부 서식 번호 정비